

지도자육성위원회 규정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대한육상연맹(이하 "연맹"이라 한다) 정관 제37조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지도자육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위원회는 육상경기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문 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도자 육성시스템 개발에 관한 업무
2. 지도자 육성 강습회에 관한 업무
3. 지도자 육성 교재발간에 관한 업무
4. 기타 지도자 육성에 관한 업무

제4조(구성)

-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1. 위원장 1인
 2. 부위원장 1인
 3. 위원 7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-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사무처 담당 직원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위촉) 위원장은 회장이 가급적 이사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이를 위촉 및 임명한다.

제6조(위원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

의결한다.

제7조(임기)

- ① 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-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연맹 및 육상경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 9 조(회의)

-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의안작성, 회의록 작성보관, 회무보고 및 기타 회무를 수행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회의결과를 사무처의 소정절차를 거쳐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장의 재가를 득함 또는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제10조(긴급한 업무처리)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11조(제척 및 회피)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.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(2010.10.14.)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(2016.6.21)로부터 시행한다.